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7월 1일 서영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8. 19.)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석 의원)

아동학대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함. 이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경윤)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진 장애아동에게는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체계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그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서도 지자체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각각 대응하게 되는 등 장애아동 학대

피해의 체계적 처리나 관련 정보 연계 등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절차 보완 및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 분리 기재 등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봄. 특히, 「아동복지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별도 조항으로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함.

먼저 지자체장이 보호조치를 할 때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의 의견 청취와 관련된 것임(각각의 개정안 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4제1항 후단 각 신설). 참고로,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 외에 19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2023년 12월말 기준 총 93명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은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는바, 개정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 이러한 전문인력의 의견을 활용하여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보다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관련하여, 2021년 관계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이후 장애아동 학대 조사·사례관리 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도 하였음.

특히 아동학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 접수는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신고접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한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임.

다만, 앞서 본 대로 현재 중앙을 제외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적으로 19개만이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나 보호의 시급성 등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5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보호대상아동 일시보호 조치 시 입소시킬 수 있는 시설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추가하는 내용(안 제15조제6항 전단)과 관련된 것임.

현재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에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으나, ‘공표용’ 자료에는 전체적인 장애 여부만 집계하고, 보호조치별로 장애·비장애를 나눈 현황은 제외되어 있음.

현재도 지자체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때 「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가는 경우가 있는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중·장기 보호조치 아동 총 1,583명 중 474명(29.9%)은 아동양육시설로, 12명(0.8%)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입소한 것으로 파악됨.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장애아동의 특수성 및 아동에 적합한 피해회복 및 지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인 보호대상아동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아동이 성인과 혼거하는 시설이 47.9%, 개별학습 공간이 없는 시설 29.8%, 실외 놀이터 및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이 52.1%에 이르는 등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발달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 일시보호조치 시 입소시킬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제59조의13제2항1))를 추가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특수성 등을 고

려하여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현재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17개 시·도에 19개소(서울, 경기 각 2곳)가 입소정원 각 8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음,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시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5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을 규정함.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종료 후 장애아동의 적응 상태, 적합한 서비스 제공 상태 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확대되는 것인 만큼 충분한 지원도 있어야 하겠음.

다음,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에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추가하려는 내용에 관한 것임.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의2)과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으로 나뉘고, 그 내용에 아동학대 예

-
-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방 관련 법령, 신고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특히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에 대하여 공적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6호 및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 현행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제2호)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전체 아동에 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 아동정보시스템 등에 피해아동이나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것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는바, 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15조의2).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 이원화된 체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바, 개정안은 학대피해아동 또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그 정보를 포함하는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유기적 정보 연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는 정보에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 아동학대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는바,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행위자에 대한 정보 등을 의미하며, 현재 학대피해아동 등이 장애인이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도 해당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

학대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행위자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시스템) 조회를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조사 중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그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음.

다음,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러는 내용과 관련된 것임.

개정안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장애인 관련 시설의 장애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장애인 관련 시설에 아동이 있을 경우 아동에 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통하여 개별 아동에게 각각 적합한 보호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각 시설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범위를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법안 심사 시 고려할 여지가 있겠음.

다음,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된 것임.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 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65조의2제1항).

현재 이러한 연차보고서는 항목별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구분하여 작성되지는 않고 있는바,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특성이 고려된 차별화되고 실효적인 장애아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특히 연차보고서 작성 내용 중 최소한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사례 분석 등 아동 정책상 특성별 대응이 중요한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나아가 필요한 경우 장애아동 외에도 이주민, 한부모가정 등의 경우에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행법상(제

65조의2제4항)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내용별 대상아동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부측에 정책적 자율성을 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